



❖ **전문가 칼럼**

이전가격 세부시행 규칙(특별납세 세무조정 시행방법) 주요 변동사항 / 1

❖ **경제통상 뉴스**

[정책동향]

中, 이전가격 과세 관리 강화 / 7

중, 자동차 산업 진흥계획안 발표 / 9

[경제동향]

中, 이동통신 3G 삼국지 시대 본격 개막 / 13

대만, DRAM산업 합병 움직임 무산 / 18

중국, 2008년 인터넷 이용자수 세계 최대 / 23

[단신뉴스]

中 월간 대외교역액,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 29

❖ **중국 지재권 단신뉴스**

구글, 중국기업과의 명칭도용 소송에서 승소 / 31

MS社 해적판 제조유통조직 주범, 최고 6년반 징역형 / 32

❖ **투자진출 A to Z**

중국에서 법인이 개인에서 차입할 경우 세무문제는?(자문의견 추가) / 33

중소기업의 취업규칙 작성 방향 / 35

중국 투자기업, 한국으로부터 자금차입은 어떻게? / 37

커피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 법인설립절차 / 39

[공지사항] OIS(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 안내문 / 44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안내

- 베이징센터 : (86-10) 6410-6162 ○ 상하이센터 : (86-21) 5108-8771
- 칭다오센터 : (86-532) 8388-7931 ○ 광저우센터 : (86-20) 8334-0052
- 다롄센터 : (86-411) 8253-0051
- IP-China Desk(중국 지재권 보호 데스크) : 각 센터 내 설치

전문가 칼럼

이전가격 세부시행 규칙(특별납세 세무조정 시행방법) 주요 변동사항

KPMG 김일중(ilchung.kim@kpmg.com.cn)

오랜동안의 검토끝에 특별세무조정관리규정이 국가세무총국의 최종 승인후 곧 공포될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은 최종 승인안을 기준으로 중국 이전가격세제 측면에서의 주요 변동사항 요약하였습니다.

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은 “특별세무조정관리규정” (이하 “관리규정”으로 함) 최종적으로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관리규정은 이미 확정되었으며, 공식적인 공포 전에 일부 사소한 수정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되며, 관리규정의 내용은 “법인세법과 그 실시조례” 제6장 “특별세무조정”의 이전가격, 사전가격합의, 이전가격문서자료(同期资料, 이하 “이전가격 검토보고서”라 함), 원가분담약정, 국외피지배회사, 과소자본 및 일반조세회피방지 규정을 근거로 한 특별세무조정사항의 세무실무 지도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세무총국은 당해 규정에서 과거에 발포한 일련의 이전가격 부분규정을 보다 완벽하고 명확하게 규범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정의 공포에 따라 현행 이전가격과 관련된 규정, 예를 들면 1998년 발포된 제59호, 2004년 발포된 제143호 및 2004년 발포된 제118호 문건이 폐지되었습니다.

2 특수 관계자의 확정

“법인세법실시조례”의 특수 관계자에 대한 정의에 따라 관리규정은 주식소유, 경영관리, 사업운영의 주요 3가지 통제기준으로부터 8개 상황을 열거하고 있으며, 다시 직접 또는 간접으로 25% 이상 지분을 소유하면 특수 관계자로 확정하고, 차입금이 납입자본금의 50% 이상 또는 차입금총액의 10% 이상을 한 당사자가 보증하는 경우 특수 관계자가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독립된 금융기관은 제외). 더욱이, 경영관리통제 및 사업운영통제에 대하여 이전 법규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전가격 검토보고서 관리

1) 동기자료¹⁾ 규정 특별히 당해 규정에서는 이전가격 검토보고서(同期資料)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은 연도에 따라 이전가격 검토보고서를 준비, 보존하고, 세무당국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고, 기업이 이전가격 검토보고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로 제공, 또는 불완전한 이전가격 검토보고서를 제공하여, 특수 관계자 거래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할 수 없는 경우, 과세당국은 세법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을 추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전가격 검토보고서 준비의무 면제 요건 관리규정은 이전가격 검토보고서 준비를 면제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 ▶ 과세연도에 발생한 특수 관계자 매출액 2억 위안 이하, 기타 특수 관계자 거래금액(금융거래는 이자수수금액에 따라 계산)이 4천만 위안 이하; 또는
- ▶ 특수 관계자 거래가 사전가격합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또는
- ▶ 외국인 지분이 50%이하이고 경내에서만 특수 관계자 거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하여는 이전가격 검토보고서 준비를 면제합니다.

3) 이전가격 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관리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5가지 방면에서 이전가격 검토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아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조직구조,
- ▶ 생산경영상황,
- ▶ 특수관계자거래상황,
- ▶ 비교가능성분석,
- ▶ 이전가격결정방법의 선택 및 사용 등

상기 내용중 비교가능성 분석 및 이전가격 결정방법의 선택 및 사용의 내용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경제분석²⁾(benchmarking study)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동기자료, 영어로는 contemporaneous documentation rule 이라고 하며, 납세자 스스로 이전가격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과세기관의 요청이전에도 상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2) 일반적으로 이전가격검토를 위해서는 관계회사간 거래가 정상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인된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시가의 범위를 산정하는 통계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외부회사들의 재무자료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며, 당해 작업을 포함하여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일련의 재무분석 작업을 '경제분석'이라고 합니다.

4 이전가격 조사와 조정

이전가격 조사 및 조정과 관련된 조항들은 과세당국의 실제조사로부터 얻은 오랜동안의 경험과 관례에 근거를 둔 내용이 많습니다.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조사 업무절차와 요청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과거에 기업과 과세당국이 논쟁을 벌였던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1) 비공개 정보자료 사용의 가능: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조사에서는 공개된 정보를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측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해 규정에서는 처음으로 과세당국이 기업의 특수 관계자 거래를 분석 평가할 때 비공개 정보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상계된 거래의 복원:

처음으로 기업과 특수 관계자가 대가의 수취와 지급을 서로 상계한 경우, 과세당국은 비교가능성을 분석 및 과세조정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상계거래를 복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과세조정시 중위수의 사용:

관리규정에서는 4분위법을 채용하여 기업의 이익수준을 분석, 평가할 때, 조사 대상기업의 이익수준이 비교대상 기업 이익수준이 중위수보다 낮을 때, 과세당국은 원칙적으로 중위 수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역방향 조사 가능성의 언급:

관리규정은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조사를 실시할 때, 기업 자신의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기업의 특수 관계자 및 특수 관계자 거래조사와 관련된 기타기업(즉 비교대상기업) 에게도 관련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일본등 기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역방향 조사”와 유사한 것으로, 과세당국은 기업 이전가격정책의 정상성을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개발, 가치사슬에의 기여도 등 여러 각도로부터 기업이 속한 그룹의 전체적인 이전가격상황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관리규정은 또 영업자산 조정³⁾、단일생산기능에 관한 세무처리원칙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전가격 과세조정 후 관리기간은 원래 3년에서 5년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전가격 조사와 관련된 세부규정은 중국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점차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임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원가분담 약정

원가분담 약정에 대한 세무처리 원칙은 OECD 및 미국 국세청의 관련 규정과 유사합니다. 법인세법 실시조례가 처음으로 도입한 원가분담 약정의 법률조항에 따라, 관리규정은 원가분담약정의 원칙、계산기초、적용범위, 약정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및 승인절차 등 다방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분석 및 처리와 관련된 규정의 경우, 관리규정은 적용될 구체적인 지침보다는 일반적인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원가분담약정이 적용 가능한 서비스

원가분담 약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비스와 관련된 원가분담 약정은 일반적으로 기업집단의 구매 및 마케팅 활동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분담원가의 성격

원가분담 약정 참여자는 개발되거나 양수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특허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원가분담약정 참여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특허권사용료가 아니라 원가분담 비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원가분담 약정 적용가능 기업

원가분담약정이 기업의 손익、납세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적시성 때문에, 관리규정은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경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스스로 분담한 원가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영업자산조정(working capital adjustment)이란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서 기업간의 영업자산 수준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자산(일반적으로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수준에 따라서 회사의 이익률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정상가격범위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전부터 중국이전가격규정에서는 국가세무총국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영업자산조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 승인절차

원가분담 약정을 맺는 경우에는 약정 후 30일 이내에 각급 국가세무국을 경유하여 국가세무총국에 등록(备案)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부분은 관리규정에 있는 원가분담 약정 규정은 합리적인 상업 목적과 경제실질의 결여, 정상가격원칙과 불부합, 비용-수익 대응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 과세당국에게 원가분담약정을 심의 결정하는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과 해석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사전가격 합의

종전 규정에 비하여 사전가격합의⁴⁾의 중대 변화는 사전가격합의를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을 확정하고, 이전가격조사와 사전가격합의의 양립을 명확히 한 부분입니다.

1) 사전가격 합의 적용

아래의 3가지 조건에 동시에 부합하는 기업만이 사전가격합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기업의 연간 특수 관계자 거래금액이 4000만 위안 이상이고 ;
- ▶ 법에 따라 특수 관계자 거래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며 ;
- ▶ 규정에 따라 이전가격 검토보고서를 준비, 보관 및 제출함.

2) 사전가격합의와 이전가격조사

관리규정에 의하면 사전가격협상은 과세당국이 사전가격합의를 정식으로 신청한 당해연도 또는 이전연도의 특수 관계자 거래의 이전가격조사와 조정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전가격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전가격조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예비회의(pre-filing meeting)의 익명성 보장

관리규정에 의하면, 앞으로는 사전가격합의 신청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예비회의에서는 회사명을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사전가격합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 한국의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와 같은 의미임

4) 이전가격 검토보고서 준비의 면제

관리규정은 사전가격합의범위 내의 특수 관계자 거래에 대하여는 이전가격 검토보고서 준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 사전가격합의결과의 소급적용 가능

과거와 비교하여 중요한 변화는, 과거에는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만 소급이 허용되었으나, 이번 관리규정에는 소급적용조항을 둔 것입니다. 관리규정에 따라 신청연도 및 이전연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수 관계자 거래는, 신청연도와 이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사전가격합의에 적용된 이전가격정책과 계산방법을 소급하여 과거거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과거 이전가격문제를 해결함에 사전가격합의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중국과세당국은 사전가격합의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규정은 사전가격합의의 적용대상 조건에 대하여 비교적 광범위하게 범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가격합의 신청대상 회사가 최소한의 요건만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맺음 말

향후 발표될 관리규정은 중국 이전가격 실무지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종전에 해석이 분분했던 부분이 명확해 진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세당국에 그 해석에 있어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기업입장에서는 향후 공포될 관리규정에 대하여 즉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기업의 실제 상황에 기초해서 효과적으로 이전가격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번 관리규정에서는 이전가격에 대한 중국과세당국의 기대와 관심을 담아 이전가격 검토보고서(동기자료)를 개별 회사들이 준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한 실무규정을 세밀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분 거래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검토보고서 작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거래에 대해서는 이전가격위험의 정도와 중요성을 사전에 파악해서 이전가격사전가격합의제도 등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끝/

경제통상 뉴스

[정책동향]

中, 이전가격 과세 관리 강화

- 이전관리 과세 등을 명문화한 상세규정 발표 -
- 이전가격 문서 및 자료 철저한 준비 필요 -

KOTRA 다롄KBC 김우정 과장(yuting95@kotra.or.kr)

□ 이전가격, 세금 피난처 대책 등 관리 명확화

- 국가 세무총국은 이전가격, 세금 피난처 등에 대한 대책으로 과세제도를 명확하게 한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실행)(이하 방법)을 발표함.
 - 이는 2008년 시행된 기업소득세법 6장 특별납세조정에 대한 상세규정임.
 - 이 방법은 이전가격 세제, 세금피난처 대책 세제, 과소자본 세제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번 방법에서는 관련자와 거래의 정의, 이전가격 문서작성 대상 등에 대해서 명기하고 있으며, 이전가격 문서 및 자료의 기술, 관련 자료 준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 정형 양식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전가격 문서의 항목, 구성내용 등은 국제적인 관습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한 문서 작성이 필요함.
 - 이전가격 문서의 준비는 매년 마감 후 5개월 이내, 세무당국이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그러나 2008년의 기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함.
 - 관련 문서의 보존은 10년간임.

□ 이전가격 조사 점차 강화

-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법제 정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국가세무총국은 매년 중점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이전가격 조사대상 기업의 약 30% 이상을 조사하도록 명문화했음.
- 또한 최근 외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건수는 연간 10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강화됨.

○ 외자기업에 대한 조세징수 부진으로 더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전 가격 등에 대한 조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 내자기업의 세수 확대에 비해 외자기업의 세수 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외자기업의 상당수가 결손을 보고하는 등 세금 탈루현상이 심각함.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전가격 등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조세 수입을 확보할 계획임.
- 또한 최근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중국 정부 역시 세수감소 및 재정지출 확대에 의해 세수 확보를 위한 이전가격조사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전망이다.

□ 시사점

○ 중국투자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 2008년 기업소득세법의 발표 이후 이전가격조사는 이미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었음. 이번 방법의 발표에 따라 규정에 맞는 문서의 작성과 대비가 필요함.
- 방법에는 이전가격 문서 및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기업을 이전가격 중점 조사대상으로 명기했음.

○ 이번 방법에서 규정한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다른 주요 무역상대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정됐다는 평가임.

※ 첨부 : 특별납세조정 실시방법(시행) 원문

자료원 : 중국회계시야망,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 NNA 등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중, 자동차 산업 진흥계획안 발표

- 중국 자동차시장 활성화방안, 세금혜택과 대출조건 완화, 보조금 지급 등 -

KOTRA 칭다오KBC 김병호(ivviivvi@kotra.or.kr)

□ 중국 국무원, 중국10대 산업 진흥계획 중 자동차산업 육성계획 발표

- 경제위기 속에서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투자기회 제공할 것
 - 1월 14일 중국 국무원회의에서는 중국 10산업 진흥계획을 목표로 먼저 철강과 자동차 분야의 구체적인 계획방안을 발표했음.
- 자동차산업 진흥계획 5개 전략조정
 - 자동차 구매부가세율, 신용대출조건 대폭 완화, 자동차 내수판매 활성화 목표
 - 대형 자동차 생산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 합병 장려
 - 자동차 주요 부품 생산업체간의 인수합병 장려
 - 신에너지 자동차기술 개발전략
 - 최종적으로 자동차 생산기업의 자주기술 확보와 국제브랜드 기업으로의 성장

□ 전세계 자동차 업계, 지금이 가장 위기

- 자동차 산업의 생산체계개선과 우수한 제품라인 형성이 장기적 목표
 - 매년 평균 100대 가량의 신모델이 전시되던 국제모터쇼가 1월 11일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는 절반수준에 불과한 50여 대의 신차 전시가 이뤄졌으며 페라리나 닛산 등 몇몇의 대형 자동차 업체에서는 아예 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줌.
 - 중국 역시 상하이따중과 이치따중(폭스바겐) 생산공장이 15일간 생산을 중지하며 재고부담을 줄이는 등 중국내 자동차업계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음.



자료원 : 상하이증권신문

- 중국의 2008년 자동차 판매량은 938만대로 2007년에 1000만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크게 빛나감에 따라 정부에서는 급히 자동차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선포했음.
- 이번에 발표된 자동차산업 진흥계획은 단기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소비를 이끌며 장기적으로 모범적 자동차산업의 구조와 더 우수한 제품라인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앞으로 3년 내에 자동차 산업성장률을 12%까지 끌어올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됨.

□ 중국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세금혜택과 대출조건 완화, 보조금 지급 등

○ 자동차 배기량 별 구매부가세 차등 부과

- 이번에 발표된 자동차산업진흥계획에서는 자동차 소비세와는 별도로 부과됐던 구매부가세(购置税)를 대폭 줄인 것으로, 이는 중국정부가 최근 자동차의 배기량 별 구매부가세를 10%로 통일해 징수하던 것을 다시 개정한 것
-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동차 구매 시 구매부가세 명목의 세목이 없고 소비세만 있는 것과 매우 비교되는 부분으로 2007년도 구매부가세 세수입만 무려 877억 위안에 달한데다 세율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는 견해임.
- 배기량 1000~2000cc 이하의 자동차 구매부가세는 기존의 10%에서 5%로 인하했으며 1000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구매부가세를 면제할 방침

- 1600cc 급의 10만 위안짜리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략 5000위안의 세금절약효과 발생

○ 자동차 할부 구매조건 및 이율에 대한 대출환경 대폭 완화

-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인민은행 등 유관기관이 모여 자동차의 할부구매에 따른 신용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대출이율도 낮춰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자동차소비공적금 설립을 합의함.
- 전세계 자동차 할부구매 비율은 평균 70% 수준으로 미국이 80~85%, 독일이 70%, 인도가 60% 에 달하는 반면, 중국은 2004년도 16%에서 오히려 8%수준으로 하락했음.
- 이단자동차금융유한공사그룹 경영자는 만약 중국의 자동차 할부 구매비율이13% 수준까지만 올라간다고 해도 자동차 소비량은 4%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농민의 자동차 구매 시 혜택 제공

- 국가에서는 오는 3월 1일부터 금년 말인 12월 31일까지 50억 위안을 투자해 농민이 기존의 삼륜차나 저속 화물차량을 배기량 1300cc 이하의 소형 화물차와 교환해 구매할 경우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
- 농민이 13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5%의 구매부가세 할인혜택에 정부 보조금지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
- 농촌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도로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농민들의 자동차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관련기업의 구조조정 적극 지원

○ 최종목표는 기업의 자주혁신을 통한 기술개발

- 자동차 및 부품관련 생산기업들의 인수와 합병 적극 지원한다고 밝히며, 중국 자동차 생산기업이 자주혁신을 통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적 브랜드의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밝힘.

- 중국 자동차공업협회 시장무역위원회 비서장인 장보선(张伯顺)은 금융위기를 통해 수많은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이 도산했으며, 기업에 있어 자주혁신능력 강화를 통해 금융위기와 같은 위험에 대처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전함.
- 중앙정부에서는 중국기업의 자주혁신과 기술개발을 위해 앞으로 3년간 100억 위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중앙정부에서는 먼저 발표한 자동차, 철강산업 외에도 조선, 석유화학, 경공업, 방직업, 유색금속, 장비제조, 전자정보 등 산업별 진흥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자료원 : sina.com, 상하이증권신문 등 기타 뉴스자료 종합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경제동향]

中, 이동통신 3G 삼국지 시대 본격 개막

- 3개의 3G 국제표준 라이선스 3개사에 각각 동시 발급 -

KOTRA 청두KBC 이영준 관장(ctuktc@kotra.or.kr)

□ 중국 3대 통신 운영업체에 3G 운영 라이선스 발급




-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2009년 1월 7일 차이나모바일에 TD-SCDMA, 차이나텔레콤에 CDMA2000, 차이나유니콤에 WCDMA 등 제3세대 이동통신(3G) 라이선스를 발급했으며, 중국 이동통신 3사는 적극적으로 3G 업무를 진행하게 됨.
- 3G 라이선스 발급은 지난 2008년 12월 31일 중국 국무원 원자 오바오 총리가 주최한 국무원상무회의의 결의를 통과하여 라이선스 발급 절차를 거친 후 2009년 1월 6일 차이나유니콤과 중국왕통(CNC)의 합병 완료로 중국 통신업계의 구조조정이 완료된 다음날 이루어지게 됨.
- 중국 정부는 자체 개발해 국제이동통신 규격 특허를 가지고 있는 TD-SCDMA의 상용화와 CDMA2000과 WCDMA를 동시에 발급함으로써 통신업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내수 확대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引领 3 G 生活

- 3G 포스터와 차이나모바일의 3G 식별 심벌마크 G3(우) -

□ 중국 3대 통신운영업체와 3G 업무 진행 현황 비교

구분			
획득 라이선스	TD-SCDMA	WCDMA	CDMA2000
구조 조정	중국 티에통(鐵通) 합병	중국왕통(CNC) 합병	차이나유니콤의 CDMA 부문과 중국 웨이통(衛通)의 기초 통신업무 인수
이동전화 고객	2G	GSM 고객 4억 5000만 명, 고객수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운영업체.	GSM 고객 1억 3294만명
	3G	08년12월말 기준, TD 고객 41만 9000명(테스트고객포함)	없음
고정전화 고객	중국 티에통 고객 소수	1억 501만 명	2억 1000만명
인터넷 고객	중국 티에통 고객 소수	2543만 명	4357만 명
이동통신 기지국 수량	☞ GSM 기지국 : 30만7000개 ☞ TD 기지국 : △△ 상하이, 쑤저우, 바오징, 우시, 우한 등 8개 도시 6만개 신설, △ 2009년 6만개 신설, △ 2011년까지 총 14만 5000개 개통	☞ GSM 기지국 : 15만 개 ☞ WCDMA 기지국 : △△ 상하이, 쑤저우, 바오징, 우시, 우한 등 8개 도시 7만 개 건설 예정	☞ CDMA 기지국 : 10만개, 2기 3G 설비 투자 후 13만 개로 증가. ☞ 2009년 차이나텔레콤 81개 도시 현지망을 CDMA EV-DO Rev.A 네트워크 설비(3G)로 교체
3G 투자	☞ 2007년 260억 위안 투자 TD 테스트망 건설, 현재 10개 도시 3G 서비스 제공, 2기 TD망 건설 후 38개 도시 개통 완료	☞ 2009년과 2010년 무선네트워크(2G+3G) 건설 예 약 1000억 위안 투자	☞ 과거 3년간 CDMA 네트워크 투자 800억 위안 초과, 차이나유니콤 CDMA 인수 662억 위안 투자
3G 계획	☞ 2009년 말까지 전국 238개 도시로 서비스 가능한 기지국 건설, 총비 588억 위안 투자 예정	☞ WCDMA/HSPA 설비 구매 시작	☞ 향후 2~3년 내 CDMA 고객 1억명까지 확보, 시장점유율 15%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까지 전국 모든 도시에 TD망 건설 완료 		
<p>주력상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G 브랜드 식별 G3 사용, 188로 시작하는 G3 휴대폰 번호 사용 ☞ 2009년 1월 8일부터 광저우, 쑤전에서 188번호 판매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직 주력상품은 없지만 국제적으로 가장 사용이 많은 성숙한 규격으로 기존 경험을 통해 빠르게 발전할 예측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天翼 189 브랜드 대대적 홍보 시작

자료원 : 比特網(www.chinabyte.com)

- 차이나모바일의 경우 2008년 4월 1일부터 중국 원천 기술의 TD-SCDMA를 이용하여 베이징, 텐진, 상하이, 쑤양, 광저우, 쑤전, 샤먼, 친황다오 등 8개 도시에서 테스트 사업과 상업화 테스트를 실시함. 2008년 12월부터는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텔레콤 간의 고객 붙들기 차원의 휴대전화 사용료 가격 인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짐.

□ 이동통신3G 시대 개막과 내수 확대

- 2008년 11월 기준, 중국은 휴대폰 사용자 6억 3000만 명과 고정 전화 고객은 4억 3000만 명의 세계 최대의 통신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1G 및 2G 이동통신 세대의 경우 국제표준규격 사용 개런티를 지급하여 왔음. 하지만 중국은 2000년 5월 5일 자체 연구를 통해 개발한 TD-SCDMA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로부터 제3세대이동통신 국제표준의 하나로 인정받은 후 상용화 작업에 들어갔으며, 2009년 1월 7일 마침내 통신운영업체에 라이선스를 발급함으로써 상용화에 이르게 됨.
- 공업신식화부 리이쥙(李毅中) 부장에 따르면 3G 라이선스 발급 이후 3G 네트워크 건설, 단말기 설비 제조, 운영 서비스, 이동통신 부가 서비스, 통신IT 서비스업 등 통신산업 체인 전반에 걸쳐 내수 확대와 경제 자극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며, 2009년과 2010년 2년간 3G 방면의 직접적인 투자는 최소한 28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3년간 3G 관련 사회투자가 약 2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3G 시대의 개막으로 기지국 신호설비 관련 업체, 무선인터넷 설비 업체, 네트워크 최적화 업체, 광통신 설비업체, 계측기기 및 시스템 업체 등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임.

□ 전망

○ 중국 유명 시장조사 기구인 賽迪顧問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 TD 휴대폰 사용자의 13.7%만이 비교적 만족하고 있으며, 48.3%의 고객은 불만족으로 조사됐음. 이는 TD망 건설이 제한적이고, 3G 휴대폰 성능이 떨어지고, 데이터 서비스 정도가 예상보다 낮다는 이유에 따른 것으로 조사됨.

- 이는 3G시대 성공적인 미래는 아직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제반 여건이 골고루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3G 운영업체의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임. 여기에 3G 휴대폰 사용의 보편화를 위한 기업차원의 대규모의 마케팅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의 이동통신 3G시대 개막으로 휴대폰을 이용한 메신저, 무선인터넷, DMB, GPS,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점차 확대될 것임. 특히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3G 시대의 성공 키포인트는 '이동인터넷 시장'으로 이동인터넷 사용료, 인터넷 접속절차 간소화 등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봄.

- 향후 3G 운영 3개사는 고객의 수요와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술 혁신, 제품 혁신, 서비스 혁신을 통해 얼마만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경쟁 우열이 가려질 것이며, 3G의 대규모 사용은 향후 2~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중국의 이동통신 3G 시대 개막은 삼성, LG 등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휴대폰 업체의 휴대폰 판매 증가와 휴대폰 부품 업체의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또한 이동 인터넷 부가 서비스 관련 업체들 역시 적극적으로 시장 진입 기회를 잡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자료원 : 중국망, 和訊網(www.hexun.com), 比特網, 중국증권망 등 종합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대만, DRAM산업 합병 움직임 무산

KOTRA 타이베이KBC 유기자(kotra.tpe@msa.hinet.net)

□ 대만DRAM 산업 합병 이슈 급전환

- 최근 대만DRAM산업 붕괴 위기와 관련해 PowerChip과Nanya를 위주로 재무형편이 가장 열악한 ProMOS 합병 움직임이 이슈로 두각된 바 있음.
- 그러나 ProMOS의 백만 대만달러 회사채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일 뿐아니라 경기 악화로 당초ProMOS 합병 의향을 보인 기업의 자체 재무문제도 가중됨에 따라 나부터 살고보자는 심리 작용으로 ProMOS 합병 의욕이 급속도로 냉각됨.
- PowerChip의 경우 ProMOS 합병 의사를 취하하고 자사 구제 주력으로 방향을 튼 상태
 - 주된 원인으로서는 ProMOS의 111억 대만달러에 달하는 전환사채가 올해 2월 14일 상환 만기일을 앞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합병추진 진도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재무 위기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어 PowerChip으로서 역시 현재 ProMOS를 합병할만한 여력이 닿지 않기 때문임.
- 또한 Nanya의 경우 아직까지 확정된 기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ProMOS 합병안은 일단 보류하고 자체 자금위기부터 지원받은 후에 차차 고려해보려는 방향으로 전향된 것으로 파악됨.

ProMOS 어디로 합병되는게 좋을까?

기업명	Elpida	Micron	Hynix
우세	1. ProMOS와의 접촉 빈번, 합병의향 가장 적극적 2. 경쟁자 중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대대만 투자 유치 3. 일본정부의 제조 기술공정지 수출에 대한 통제 약한 편	1. NAND Flash 기술 우세 겸비 2. Formosa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1. ProMOS의 90/70/65 나노 공정 기술이전 기업 2. 세계 3대 NAND Flash 제조업체
열세	NAND Flash 기술 이전 조건 결핍	1. Micron 수중 자금 부족 2. Flash 기술 이전 여부에 변수가 있음	1. 자체 재무상의 어려움 2. 한국 정부의 공정기술 수출 통제 엄격

자료원 : 각 기업 및 시장연구보고 ; 經濟日報 정리

□ 대만DRAM산업 대정부 구제 요청 진척 회고

○ 2008년 12월

- ProMOS, 재무 위기 심화로 정식으로 대만 경제부에 구제 지원 요청
- PowerChip, 경제부에 합병 기획서 정식 제출했으나 정부의 의도 방향과 괴리가 있다는 이유로 5일만에 경제부로부터 반려/수정 요구 받음.

○ 2009년 1월

- PowerChip, ProMOS 합병안은 보유하고 우선 급선무로 자체 재무위기 해소 관련 정부 구제금 지원 요청하는 방침으로 전향할 의향을 표명
- ProMOS, Elpida와 공동 서명으로 합병 기획서 제출(Rexchip을 명목상 합병기업 역할을 담당하여 궁극적으로 ProMOS와 Elpida 합병)했으나, 대만 경제부는 Rexchip의 서명이 빠졌기 때문에 Rexchip의 합병안 참여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반려/수정 요구.

□ 대만 정부vs 기업, 입장차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아

- PowerChip의 DRAM 구제조치 기획서가 대만 정부로부터 반려되어 수정을 요구받은 것에 이어 최근에는 ProMOS와 Elpida가 공동 서명한 통합 기획서 역시 반려됨.
- 대만 경제부는 기업의 구제조치 기획서 내용이 추후 대만 내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보장성이 저조해 대만 정부 DRAM 산업 구제의 궁극적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음.
- 대만 정부는 DRAM산업 구제조건으로 대만 DRAM 산업의 근본적 취약점인 기술 자생력 부재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원천기술 확보를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 구제금 획득과 동시에 ProMOS도 합병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정작 기업체의 경우 자체 재무부담으로 ProMOS 합병의사를 접거나 기술이전 기업이 원천기술 이전에 쉽사리 양보하지 않고 있어 기업과 정부의 입장이 대치 상태를 보임.

정부 vs 기업 입장 대치 현황

	PowerChip	Nanya
정부 구제금 요청	PowerChip : 600억 대만달러	Nanya + Inotera : 500억 대만달러
대만 정부 구제지원 전제조건	1. 대만의 원천기술 확보 2. 구제금 취득과 동시에 ProMOS 합병	
기업측 입장	1. ProMOS 합병할 계획 없음. 2. 그룹 방식으로 ProMOS 인수 가능(단, 합병 계획 없음)	1. Micron의 원천기술 대만 정착 달성 어려움. 2. ProMOS가 우선 부채 문제를 해결한 이후 합병 고려

자료원 : 工商時報 정리

□ 향후 전망

-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구제 지원금으로 2000억 대만달러의 국가발전펀드 구제금 행사권을 지고 있는 대만 정부와 DRAM 기업 간에 ProMOS 합병과 원천기술 이전을 중심으로 입장이 대치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빠르면 올해 음력 설 이전에 조치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대만 정부의 일정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당장 2월 14일에 만기가 되는 ProMOS의 111억 대만달러 해외전환사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아직까지 미지수 상태로 관심이 주목되고 있음.
 - 만약 ProMOS가 제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도산된다면 DRAM 산업의 과잉공급 및 가격급락 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ProMOS의 채무 미상환으로 적잖은 해외 채권자가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됨.
 - 현재 대만 DRAM 기업의 경우 자체 재무위기 해소에 급급한 상황이며 해외 대형 사모펀드의 DRAM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ProMOS가 재무위기가 도산으로 종결될 경우 6000여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실업문제까지 가중될 수 있음.
- 한편, 대만 DRAM 업체의 ProMOS 합병 의향이 가라앉은 지금, 업체들은 이대로 ProMOS가 시장에서 낙오되고 정부 또는 주채권 은행에서 청산하기를 기다린 후 당초보다 낮은 매입가로 ProMOS를 합병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한편, 모건스탠리는 현재 대만 DRAM산업 이슈는 여전히 정부 구제 조치로 온통 포커스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모든 기업을 구제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에서 만일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할 경우 Inotera가 대만계열 DRAM업체 중 유일하게 이번 불경기를 극복하는 업체가 될 것으로 전망.

- ProMOS의 경우 정부의 구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올해 3월 전에 수종의 모든 현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 PowerChip의 경우 제휴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없이는 올해 6월 경에 유동성 리스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Nanya의 경우 자본구조 재조정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올해 말 이전에 순자산이 제로수준까지 급강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음.

대만 4대 DRAM 기업 채무 현황 비교

기업명	채무 내용	올해 채무 상환 만기금액(억 대만달러)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Nanya	전환사채	5			
	보통 회사채		25	27	62
	장치 대출				
	합계	5	25	27	62
Inotera	전환사채				
	보통 회사채				20
	장치 대출	12	39	66	39
	합계	12	39	66	59
PowerChip	전환사채		51		
	보통 회사채			20	
	장치 대출	37	62	43	62
	합계	37	113	63	62
ProMOS	전환사채	111			
	보통 회사채				
	장치 대출	13	37	43	37
	합계	124	37	43	37

자료원 : 기업별 재무보고 ; 經濟日報 정리

자료원 : 경제일보, 공상시보, DIGITIMES 등 현지 언론 보도 종합 정리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중국, 2008년 인터넷 이용자수 세계 최대

- 인터넷 이용자 2억9800만 명, 인터넷 쇼핑도 급증세 -
- 휴대폰 이용 인터넷 접속자 1억1760만 명, 전년대비 133% 증가 -

KOTRA 청두KBC 이영준 관장(ctuktc@kotra.or.kr)

□ 중국 인터넷 이용자수 2억9800만 명으로 세계 1위

- 중국인터넷정보센터(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의 2009년 1월 13일 발표한 第23次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제23차 중국 인터넷 발전상황 통계 보고)에 따르면 인터넷 보급률은 2007년 16%에서 2008년 말 기준 22.6%로 증가했으며, 인터넷 이용자수는 2억 9800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8800만 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함.
 - 이 중 농촌 인터넷 이용자는 8460만 명으로 전년대비 6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인터넷 이용시간은 1주일 기준 16.6시간으로 2007년의 16.2시간에서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 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 인터넷 접속은 90% 이상의 이용자가 광대역을 이용하며,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자는 1억176만 명으로 2007년 5040만 명에서 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정부는 2009년 1월 7일 통신운영업체 3사를 각기 다른 표준의 이동통신 3G 사업자로 선정하고 3G시대 본격 개막했으며, 이 때문에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성별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인터넷 보급률
 - 인터넷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광둥성으로 4554명이며,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으로 보급률은 60%, 다음은 상하이로 59.7%를 기록함.

중국 지역별 인터넷 이용자수 및 보급률(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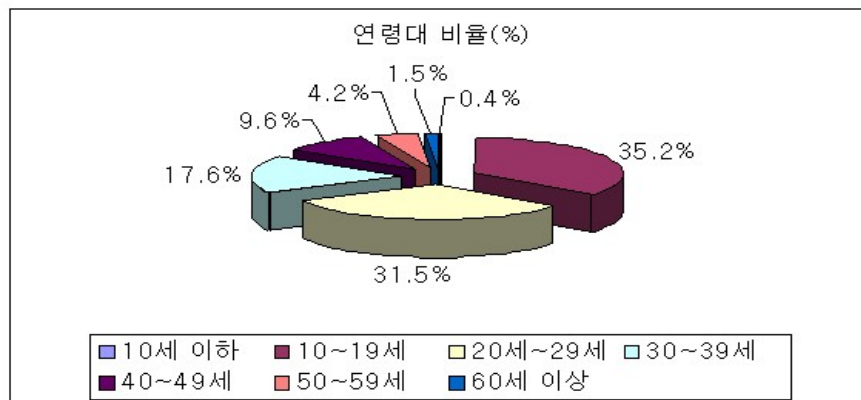
지역		인터넷 이용자수(만 명)	인터넷 보급률	전년대비 증가율
동부	베이징	980	60.0	32.9
	톈진	485	43.5	69.1
	허베이성	1,334	19.2	75.0
	헤이룽장성	620	16.2	30.2
	지린성	520	19.0	19.8
	랴오닝성	1,138	26.5	45.3
	산둥성	1,983	21.2	57.9
	장수성	2,084	27.3	18.6
	상하이	1,110	59.7	33.7
	저장성	2,108	41.7	39.7
	푸젠성	1,379	38.5	59.3
	광둥성	4,554	48.2	36.2
	하이난성	216	25.6	49.9
중부	산시(山西)성	819	24.1	52.8
	허난성	1,283	15.7	34.2
	안후이성	723	11.8	23.1

	후베이성	1,050	18.4	48.7
	후난성	999	15.7	44.7
	장시성	610	14.0	19.5
서부	네이멍구	385	16.0	19.7
	산시(섬서)성	790	21.1	52.8
	닝샤	102	16.6	66.4
	간수성	327	12.5	49.5
	신장자치구	625	27.1	72.1
	칭하이성	130	23.6	117.4
	시짱자치구	47	16.4	29.5
	쓰촨성	1,103	13.6	36.4
	충칭	598	21.2	67.9
	윈난성	548	12.1	81.0
	꾸이저우성	433	11.5	93.4
	광시자치구	734	15.4	31.1
	합계	29,800	22.6	41.9

자료원 : 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 10~19세가 전체의 35.2% 최대

- 연령대별로 보면 10~19세 학생층의 이용이 35.2%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20~29세로 전체 이용자수의 31.5%를 차지함. 40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07년 8.1%에서 9.6%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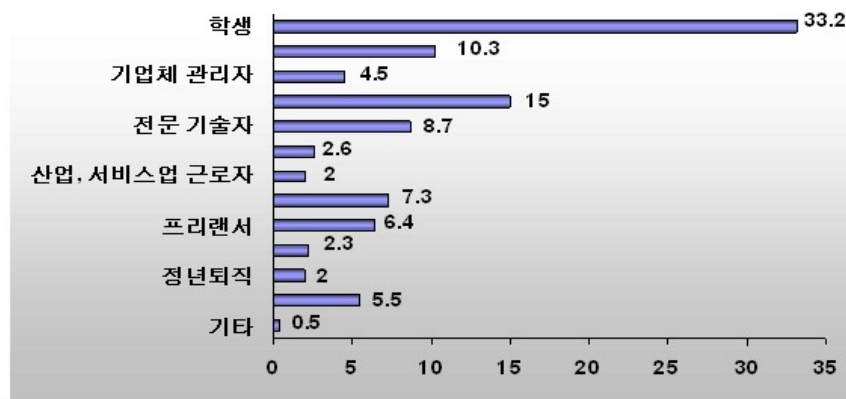


자료원 : 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 인터넷 이용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최대
 - 학력별로 보면 ▷ 고등학교 39.4%, ▷ 중학교 28% ▷ 전문대 13.9%, ▷ 대학본과 12.2% ▷ 중학교 이하 5.4% ▷ 석사 이상 1.0%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이용장소(복수 선택)로는 ▷ 집 78.4% ▷ PC방 42.4% ▷ 회사 20.7% ▷ 학교 11.3% ▷ 공공장소 2.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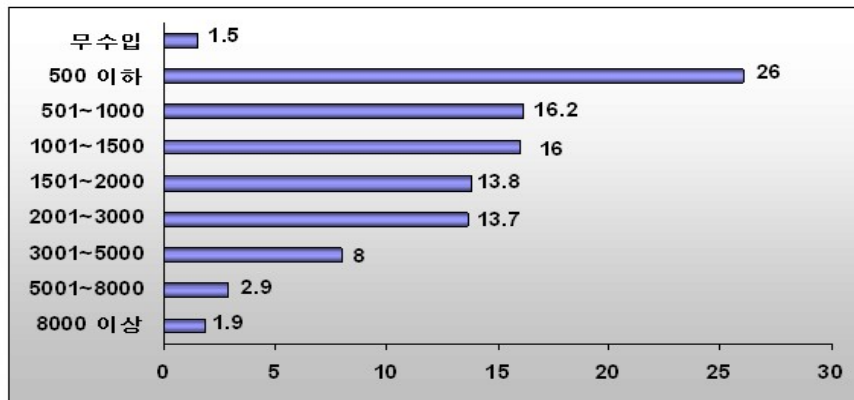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의 직업구조 및 소득수준
 - 인터넷 이용자는 학생이 전체의 33.2%로 가장 많으며, 소득수준은 500위안 이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대 이용자가 학생인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이용자 직업 구조(%)



자료원 : 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소득수준(위안)



자료원 : 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 인터넷 응용분야

-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주로 음악, 인터넷 뉴스, 메신저, 검색엔진, 인터넷 영상물, 온라인 게임, 전자우편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인터넷 응용 분야 사용률 및 이용자 수

인터넷 응용 분야		사용률(%)	이용자 수(명)
인터넷 미디어	인터넷 뉴스	78.5	2억 3,400만
정보 검색	검색 엔진	68.0	2억 300만
	인터넷 구직	18.6	5,500만
인터넷 통신	전자우편	56.8	1억 6,900만
	메신저(IM)	75.3	2억 2,400만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보유	54.3	1억 6,200만
	블로그 갱신	35.2	1억 500만
	포럼/전자게시판	30.7	9,100만
	사교	19.3	5,800만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온라인 게임	62.8	1억 8,700만
	인터넷 음악	83.7	2억 4,900만
	인터넷 비디오	67.7	2억 200만
전자상거래	인터넷 구매	24.8	7,400만
	인터넷 판매	3.7	1,100만
	온라인 결제	17.6	5,200만
	여행 예약	5.6	1,700만
인터넷 금융	온라인 은행	19.3	5,800만
	주식	11.4	3,400만
인터넷 교육	온라인 교육	16.5	4,900만

자료원 : 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

□ 시사점 및 전망

- 중국은 2008년 6월 인터넷 이용자수 세계 최대 국가가 됐으며, 방대한 인터넷 이용자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쇼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아이리서치(iResearch)에 따르면 2008년 인터넷 쇼핑 이용규모는 1300억 위안을 돌파해 전년대비 1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예측하며, 2012년에는 7910억 위안 규모에 달할 것으로 내다봄.
- 또한 중국은 3세대 이동통신이 막 본격화되기 시작해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 이용자는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이는 휴대폰 부가서비스에서 노하우를 가진 우리 기업에도 진출기회가 늘어날 것임.
- 중국의 인터넷 쇼핑 시장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지만, 현재 외국기업의 중국 인터넷 쇼핑물 투자는 유무형의 각종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어,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인터넷 판매를 유통 통로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인터넷 시장 관련 내용은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 '[중국]중국 인터넷 쇼핑시장 현황(2008년 3월 14일)' 참고 바랍니다.

자료원 : 第23次中國互聯網發展狀況統計報告(2009년 1월) 주요 내용 요약, 중국망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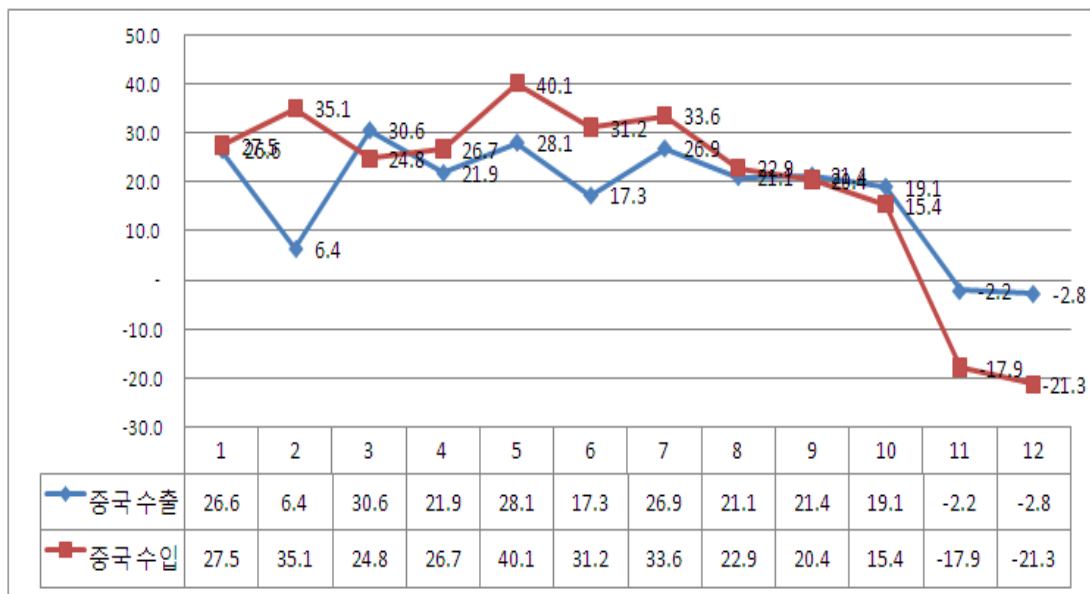
[단신뉴스]

中 월간 대외교역액,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08년 12월 중국 대외교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11.1% 하락, 수출과 수입이 각각 2.8%(1,112억달러), 21.3%(722억달러)하락함으로써 작년 1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 11월에 비해 12월 수출입 총액, 수출, 수입의 성장률은 각각 2.1%p, 0.6%p, 3.4%p 하락함
- 중국의 대외교역액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월간 기준으로) 2001년 10월 이후 7년만에 처음이며 월간 수출과 수입 성장률이 '98년 10월 이래 처음으로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2008년 월별 중국수출입 증감추이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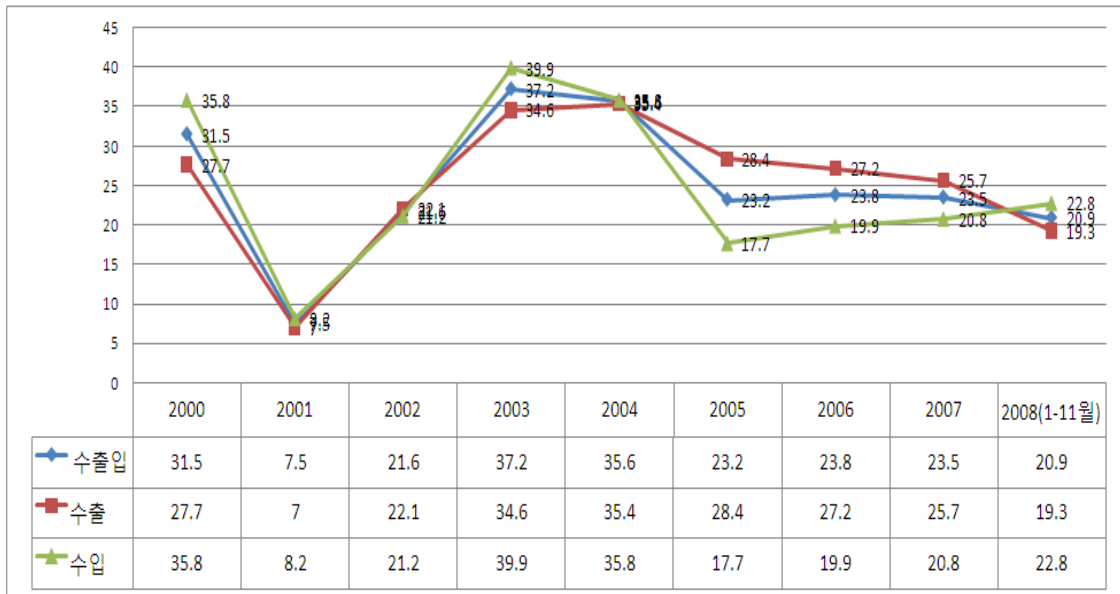
자료원 : 중국해관통계, 현지 언론 종합

- 중국은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에 대응키 위해 2008년 하반기부터 수출증치세 환급을 인상, 관세율 조정 등을 통해 대외무역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외부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

- 12월 정책조정에 포함된 상품의 수출비중이 전년동기대비 4.8% 증가, 전체 수출액 비중이 11월의 45.8%에서 49.0%로 상승함
그중 의류, 플라스틱제품, 가방과 조명용구 등 상품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
-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장권성(张军生)주임은 국제금융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실체경제에 주는 영향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외수요는 여전히 위축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09년 중국 수출입 증가율은 5%이하로 추정함

중국 수출입 증가율 추이('00년~'08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원 : 중국해관통계, 현지 언론 종합

자료원 : 신화망 등 현지 언론 종합

자료정리 : KOTRA 중국지역본부

[중국 지재권 단신뉴스]

□ 구글, 중국기업과의 명칭도용 소송에서 승소



- 2009년 1월6일 베이징 하이띠엔구(海淀区)인민법원은 1심에서 구글의 기업명칭을 도용한 피고 ‘베이징구글’의 부정경쟁 행위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구글중국’(미국 구글사의 중국법인)에 10만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기업명칭을 변경할 것을 판결
- 법원은 ‘베이징구글’이 타인이 소유한 저명상표의 중문명 및 먼저 신청된 상호명을 악의적으로 사용하여 공정 및 신용원칙, 공인된 상업도덕에 어긋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
 - 도용업체인 ‘베이징구글’이 먼저 기업등록을 마쳤으나, 이에 앞서 ‘구글중국’이 기업등록의 첫 전단계인 기업명칭 신청을 마침
 - 2007년 중국공상총국은 ‘구글중국’의 ‘GOOGLE’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한 바 있음
- 우리기업도 저명상표 보호제도를 이용하여 기업명칭 도용에 대응할 수 있고, 중국에 법인 설립 시, 회사명의 중문명이 우선등록되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함

자료원 : 중국지식산권신문 1.9일자, 시나닷컴 등 언론종합

□ MS社 해적판 제조유통조직 주범, 최고 6년반 징역형

- 2008년 12월 31일, 광둥성 선전(深圳) 푸티엔(福田) 법원에서 MS사 소프트웨어 해적판의 제조 및 유통 관계자 11명에 대해 최고 150 만위안 벌금형과 6년반의 징역형을 판결
 - 주요 범죄자 왕원화(王文华), 장다안(张大安), 처팅핑(车庭峰)에 대해 각각 150 만위안, 40 만위안, 80 만위안 벌금형 및 6년 6개월, 5년,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함
 - 기타 범죄자 8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부터 3년 6개월까지 판결
- 2007년 7월, 미국 FBI와 중국공안이 공동으로 MS사의 Windows XP, Office 2003 등 S/W를 대량 복제하여 미국에 유통시키던 해적판 생산 전문조직을 적발하고, 2008년 9월4일 선전 푸티엔(福田) 법원에서 공개재판 시행
- 중국정부는 미국 FBI로부터 동 해적판 제작 첩보를 입수한 뒤, 단 일사안으로 대규모라 할 수 있는 68명의 공안요원을 투입하여, 용의자 11명을 현장 검거함으로써 지재권 보호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이 긴밀히 협력한 대표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자료원 : 중국지식산권신문 1.14일자, 양성신문 (羊城晚报) 등 언론종합

투자진출 A to Z

중국에서 법인이 개인에서 차입할 경우 세무문제는?(자문의견 추가)

편집자주)

중국투자뉴스 134호에 실린 ‘중국에서 법인이 개인에서 차입할 경우 세무문제는?’란 주제의 정보 관련, 동 내용이 개인의 입장에 대해서만 언급이 있었고, 정작 자금을 대여받은 법인의 입장에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화인회계경영법인 김춘호 회계사님이 세무적 입장에서 보다 상세한 자문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 좋은 자문의견 주신 김춘호 회계사님(상무)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자문의견)

한국의 경우에는 쌍방간의 유효한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이 그대로 인정이 되어 개인은 이자수입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우선 원천징수를 한 후 다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이자비용으로 손금처리가 가능하나 만약 특수관계가 있다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이외에서 자금을 차입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동종대출이자율의 범위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금융기관 동종대출이자율이 5%이고 비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계약 이자율이 6%일 경우에는 5%를 초과하는 1%에 대한 부분은 "비용" (손금)으로 인정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한국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한국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이자율과는 상관이 없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이자율이며(시가), 중국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동종대출의 평균이자율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경우 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부인으

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이 되지 아니하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평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20%로 나갔는데, 확인해 보니 2007년 8월 15일부터 5%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中国注册会计师全国统一考试辅导教材 316页) . 즉, 2007년 8월 14일 귀속분까지는 세율이 20% 였으나, 2007년 8월 15일 이후 귀속분에 대해서는 5%로 개정되었습니다.

(정리 : 칭다오KBC 황재원, zwhwang@naver.com)

중소기업의 취업규칙 작성 방향

문의1)

kotra에서 작성해 배포한 직원핸드북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핸드북내 정해진 금액의 한도액은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1)

규율 위반의 기준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예를 들어, 2,000위엔은 경미한 규율 위반, 5,000위엔은 엄중한 규율위반의 경우, 단순히 참고적인 수준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대기업 같으면, 금액을 더 높게 잡는 게 당연하며, 영세한 기업이라면 이보다 더 낮게 잡아도 됩니다.

유의사항은

- (1) 노동쟁의 발생시, 중재위원 또는 법관들이 판단컨데, 중국사회에서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위엔 이상을 엄중한 규율위반으로 설정해 놓는다면, 그 비합리적인 금액 수준 때문에 회사가 패소할 확률이 높아지고, 또 무엇보다도 회사 규칙제도에 관해 직원 의견수렴 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단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미위반 1,000위엔, 일반위반 2,000위엔, 엄중위반 4,000위엔 등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구도로 짜여져 있다면, 제 3자가 볼 때 더욱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다.
- (2) 이번 배포한 취업규칙상 금액기준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 중국 노동 전문가들의 표준문안에서 따온 것으로, 그 정도라면, 회사가 아주 크거나 아주 영세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중국사회에서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2)

저희는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직원이 신입사원이며(금년도 대학교 졸업예정자), 규모도 처음 하는 것으로 각 직책 직급이 없는데 상

기 직원핸드북을 그대로 활용해도 될지요?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출발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2)

조그만 회사가 직원도 몇 명 안 된다면, 꼭 필요한 규정부터 갖추어 시작하면 됩니다. 규율 위반은 상세할수록 좋으니, 그대로 활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이밖에 근태관리도 직원의 출결관리, 병가, 잔업관리 측면에서 회사가 작든 크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귀사의 경우, 임금규정, 고과규정은 아직 체제가 잡히지 않았으니, 현재의 체제에 맞게 최대한 단순화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업규모가 작든 크든 외국에서 경영하시려면, 노동문제로 인한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급적 제도를 갖추어 시행해 나가면서, 업그레йд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3)

직원 하나가 정년퇴직에 가까운 나이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참고로 동 직원은 공무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답변3)

이미 정년퇴직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보험도 경제보상금도 또 노동법의 적용도 받지 않고 편하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에 가까워도 정년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각종 사회보험을 비롯, 경제보상금도 주어야 합니다. 노동효율도 떨어지고, 또 본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회사내에서 어떤 장난을 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직원은 가능한 채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아예 정년퇴직한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르바이트생 사용하듯이 편하게 아무 때나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군인이라면 절대 채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인의 경우, 군경력까지 귀사의 근속연수에 합산되어 나중에 경제보상금을 덤터기 쓸 수 있습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

(정리 : 칭다오KBC 황재원, zwhwang@naver.com)

중국 투자기업, 한국으로부터 자금차입은 어떻게?

문의)

자금차입에 대한 문의입니다.

1. 당사에 100% 투자한 한국 본사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합니다.
2. 문의는 법인-법인 차입입니다. 그리고 개인-법인차입도 가능한지요?

답변)

[중국 현지법인 외채 차입방법]

[외채신청절차]] - 문의처 : 외환관리국 자본항목처

- 한국본사에서 계약서 원본을 작성해서 보내온다. 중국어로 번역해야 한다.
- 최종 험자보고상 자본금이 완전 납입상태이어야 한다. (본사본 1부 준비)
- 영업집조, 조직기구대마증,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등 복사본 1부 준비 후 공장 날인한다.
- 서면 신청서 작성(회사 기본상황, 예를 들면 회사 명칭, 투자자, 업종, 투자금액 등 포함)
- 외환관리국에 가면 외채체결상황표가 있는데, 등록해서 외채번호 따고, 허가 되면 외채계좌 개설비준서가 발급된다.
- 외채계좌개설 비준서를 갖고 원하는 계좌개설은행에 외채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이체 경로를 본사에 보낸다.
- 외채가 입금된 후 인출하려면 인출등록 신고수속을 밟는데, 은행에서 잔액증명을 떼서 외환관리국에 제출한다. 그러면 외환국에서 외채체결 상황표에 인출기록을 등록한다.
- 외채 환전하려면 외채환전 비준서를 외환국으로부터 받고 그걸 근거로 은행에 제출하여 환전한다.

[기타 유의사항]

- 외채한도 : 투자총액에서 납입자본금을 제외한 금액(투자금액별도 납입자본금비율이 있음)을 말하여, 장기외채는 한번 사용하면 상환해도 한도가 살아나지 않으나, 단기외채는 상환하면 한도가 살아남.
- 외채 원리금 상환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후 송금(세무국 확인이 있어야 은행에서 송금 가능)
- 외채계약관련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차이가 많을 경우 이전가격 등의 문제 발생소지 있고, 외환관리국 불승인 가능성 있으므로 사전 외환관리국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별첨)

[한국 대출자 업무처리] - 문의처 : 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

- 한국 본사 대출 : 거래은행(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대부채권으로 신고
- 개인대출(출자금액 10% 미만 또는 개인) : 한국은행 신고대상

[外債合同必备内容 (외채계약 포함해야 할 내용)]

- 合同应有中文译本(계약은 중문번역본이 있어야 한다.)
- 当事人中英文名称 (借款人、贷款人) (당사자 증영문 명칭<차주사, 대출인>)
- 借款金额(차입금액)
- 借款币种(통화)
- 借款利率(금리)
- 借款期限(기간)
- 宽限期 (提前还款或推迟还款等内容) (거치기간: 조기상환 또는 지연상환 등)
- 提款方式 (提款日期, 金额) 인출방식(인출일자 및 금액)
- 偿还方式 (本金和付息次数) (상환방식) 원금과 이자지급 회수
- 合同适用法律 계약적용법률
- 签约日期和合同到期日 계약일자와 계약만기일
- 如有担保人加担保内容 담보인이 있는 경우 담보내용 추가

(자문 및 자료제공 : 부산은행 청도사무소 성동화 소장 - 칭다오투자 기업지원센터 금융부문 고문컨설턴트)

(정리 : 칭다오kbc 황재원, zwhwang@naver.com)

커피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 법인설립절차

저희 회사는 중국 베이징에 커피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내에서 커피생두를 구입하여 북경에서 공장 또는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문의1)

중국에서 커피를 로스팅하는데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있는지요? 환경오염 문제로 현재 커피 로스팅을 금지하고있다고 하는데 그게 확실한 것인지요?

답변1)

현행 법률법규에는 커피 로스팅에 대해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07)에서도 외국투자자의 커피 로스팅에 대한 언급이 없고, 중국 현지의 식품 제조, 가공공장에서 커피를 로스팅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에서 커피를 로스팅하는것에 대한 법적 금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의2)

커피관련한 공장을 설립한다거나 영업 또는 커피숍 등을 운영할 경우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답변2)

커피관련한 공장 또는 커피숍의 설립절차 및 소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관<취득서류>	제출 서류
(1)베이징시공상국 <명칭예비심사통지서>	1. 회사명 예비심사 신청서 2. 투자자수권위임서 3. 투자자 사업등록증 사본
(2)베이징시환경보호국 <환경영향평가의견서>	1. 건설 프로젝트환경관리 신청등기표 (건물임대시 불필요) 2.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등록등기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건설프로젝트 장소의 지형도 (건축지역의 주변상황도 표기) 4. 회사명 예비허가 통지서 5. 건물 임대계약서, 건물소유증명 6. 프로젝트 설계평면도 7. 상황설명 8. 수권위임장 9. 오염물 처리시설 설명
<p>(3)베이징시위생국 <위생허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대표 또는 책임자 자격증명 2. 생산경영장소 사용증명 3. 생산경영장소 평면도 4. 생산경영장소의 주소 및 위치표시도 5. 위생허가증신청서 6. 건설프로젝트위생심사신청서 7. 식품판매기업은 기업위생관리 사내규정이 있어야 함 8. 법인 또는 책임자 교육증명 9. 신청조직에서 공상행정기관에서 취득한 기업명칭 예비허가통지서 또는 공상영업허가증 사본.
<p>(4)베이징시발전개혁위원회 <프로젝트인허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젝트신청보고서 2. 중외투자 각 측의 사업자등록증, 상무등기증 및 심사를 거친 최신기업재무제표 3. 투자의향서 4. 은행에서 발급한 융자의향서 5.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프로젝트는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환경영향평가의 견서를 제출해야 함. 6. 도시규획에 관련된 프로젝트는 도시규획행정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규획의견서를 제출해야 함. 7. 건설용지에 관련된 프로젝트는 국토자원 행정부서에서 발급한 프로젝트용지 예비심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함. 8. 국유자산 또는 국유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할 경우 관련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확인문서를 제출해야 함 9. 교통영향 분석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는 교통행정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교통흐름 평가의견을 제출해야 함

	10. 구, 현급 발전개혁위원회부서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야 할 경우 소재지 구, 현의 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급한 프로젝트허가 예비의견을 제출해야 함
(5)상무국 <투자허가신청>	1. 승낙서, 설립신청수권위임장, 피위임인 신분증 사본 2. 설립신청표 3. 타당성 연구보고서 4. 투자자가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공증인증), 한국 법인장 여권사본(공증인증) 및 신용증명, 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여권 사본(공증인증), 신용증명 5. 부동산 임대 또는 소유권 증명 사본 6. 외상투자기업 명칭예비심사통지서 사본 7. 이사회 구성인원 명단사본(성명, 직무, 위임측, 임기, 국적, 여권번호, 사인 등 내용을 포함) 및 구성인원 여권 사본(법인장 여권은 공증인증) 8. 정관
(6)베이징시품질기술감독국 <예비 바코드통지서>	1. 법인장 여권 사본 2. 상무국 비준서류 3. 명칭예비심사통지서 사본
(7)상무국 <비준증서>	예비바코드통지서
(8)베이징시공상국 <영업허가증>	1. 외상투자기업설립신청서 2. 정관 3. 사업자등록증, 사본(공증인증) 4. 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 5. 수권위임서 6. 상무국 비준서류와 비준증서 7. 기업연계인 등기표 8. 법률서류 송달수권서
(9)베이징시공안국출입경관리국 <인감 제작>	1. 영업허가증 부분 원본 및 사본 2. 비준증서 원본 및 사본 3. 법정대표자 여권사본 4. 대리인의 신분증명 원본 및 사본 5. 신청서
(10)베이징시질량기술감독국	1. 영업허가증 부분의 원본 및 그 사본 2. 비준증서 사본

<조직기구바코드증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법정대표인 신분증 복사본 4. 코드증서 수속비용 영수증 원본 제출 5. 회사 인감
(11) 국가외화관리국 및 북경외화관리부 <외화등기증> <구좌개설 통지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허가증과 비준증서 원본 및 사본 2. 정관 원본 3. 조직기구바코드증서 원본, 회사인감 4. 정관비준서 원본 및 사본, 비준증서 원본 및 사본 5. 신청서
(12) 지방세무국 및 국가세무국 <세무등기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허가증 부분 사본 2. 비준증서, 회신(批復) 사본 3. 조직기구바코드증서 부분 사본 4. 법정대표인 신분증명 사본 5. 은행구좌개설비준(외환관리국에서 발급함) 6. 회사정관 사본 7. 임대계약 및 임대료영수증(검물임대의 경우) 또는 부동산소유증명 8. 법인인감과 재무인감
(13) 상무국 <대외무역경영자등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외무역경영자등기표 2. 영업허가증 부분 사본 3. 비준증서 사본 4. 조직기구바코드증서 사본 5. 법정대표자 여권사본 6. 대리인 신분증사본
(14) 세관 <세관등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허가증 부분 사본 2. 대외무역경영자등기비안표 3. 비준증서 사본 4. 정관사본 5. 세무등기증 6. 구좌개설증명 사본 7. 조직기구바코드증서 부분 사본 8. 관련 신청표, 등기표 9. 법인인감, 법정대표자인감, 통관인감
(15) 베이징시수출입검역국 <출입국검역등기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표 2. 영업허가증 원본 및 사본 3. 조직기구바코드증서 4. 대외무역경영자 등기비안표 또는 비준증서
(16) 베이징시세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허가증 부분 원본 및 사본

<세관수출입 IC카드>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세무등기증 3. 조직기구바코드증서 4. 대외무역경영자등기비안표 5. 비준증서 원본 및 사본 6. 세관등기증
(17)통계국 <통계등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표 2. 영업허가증 원본 및 사본 3. 조직기구바코드증서 원본 및 사본 4. 자본검사보고서 또는 입금증빙
(18)재정국 <재정등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준증서 2. 영업허가증 부분 3. 사업타당성연구보고서, 정관 4. 상무국에서 발급한 批復 5. 조직기구바코드증서 6. 세무등기증 7. 구좌개설허가증, 외환등기증 또는 인감카드

- 상기 절차 및 서류는 베이징시 외상투자 식품기업 설립관련 일반 절차 및 소요서류로서, 특정 지역, 조직형식, 회사규모, 제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사항중 ‘발전개혁위원회’(發改委)의 비준은 공장일 경우에만 필요함
커피숍은 ‘발전개혁위원회’(發改委) 비준이 필요없음

자료원: 금평법률사무소 김호 박사(khc2002@empal.com)

[공지사항]

kotra



해외투자진출 정보만을 모아 놓은 대한민국 정부 투자진출 포털사이트
「OIS」 밖에 없습니다!!



정부·유관기관의 해외진출정보를 one-stop 서비스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KIET, KIEP 등 31개
해외투자진출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해외진출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본정보에서 지역별 Q&A까지

국가 기본정보에서 심층보고서, 동영상자료까지 해외진출에 필요한 단
계별, 국가별 정보를 한꺼번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진출관련 궁금한 사항을 상담해 드립니다.

해외투자에 필요한 국내절차는 물론 국가별 투자환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외투자 Q&A](#)에 올려 주세요.

OIS(www.ois.go.kr)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여러 기관에 흩어진 투자진출 관련정보를 한 곳에 모아 One-Stop
서비스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으로 구축한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한
통합포털사이트입니다.